

서울고등법원 2024. 11. 20 선고 2023나20582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11. 20 선고 2023나205829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2가합53441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음 담당변호사 김주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세리

변론 종결 2024. 8. 28.

판결 선고 2024. 11. 20.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2가합534411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 2022. 7. 21.자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2)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9, 10행의 "원고는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2느합200018)"를 "이에 원고는 C를 상대로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그 결과 제1심에서 'C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100만 원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심판이 내려졌으며(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4. 6. 4.자 2022느합200018 심판), 이에 대해 C가 항고하여 현재 항고심 계속 중이다(수원고등법원 2024브10041)"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11, 12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12호증"을 추가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인데,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 명의신탁 약정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아울러 피고는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C와 함께 사문서위조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가 제1심에서부터 무분별하게 소송자료를 제출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를 변경하는 것은 피고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

2) 피고는 원고 주장의 명의신탁 약정이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청구 변경의 적법 여부

1) 원고가 제1심에서는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일부 지분을 양도받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전제로 이를 사해행위로 보아 그 취소 및 원상회복과 관련 손해배상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임을 전제로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관련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한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을 변경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이는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제1심에서의 청구와 이 법원에서의 청구 모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내지 이전 및 관련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청구의 기초가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고(더욱이 원고가 항소장 제출 직후부터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하여 청구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까지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 변경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원고가 항소장 제출 직후 청구를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소송자료도 대부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청구의 변경으로 인하여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 변경이 피고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해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 약정⁴⁾이 있었다는 점에 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2019. 4. 9.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지불했으며, 그 매매대금도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받은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점 등을 명의신탁 약정의 주요 근거로 내세우나,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불법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원고의 청구도 나머지 점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이에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항석

판사공도일

판사성언주

별지

1) 원고의 2024. 6.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이 부분이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이 2024. 7. 21.이므로 위와 같이 선택한다.

2)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원고는 제1심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청구를 변경했으므로 항소취지도 위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한편 원고의 2024. 6.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종전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변경 후' 청구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변경 전' 청구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 변경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3) C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할 금액은 664,559,883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원고의 일부 청구에
따라 2억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4) 원고의 주장은 C를 명의신탁자, 피고를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보이나, 원고를 명의신탁자, 피고를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하더라도 결론은
마찬가지이다.